

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- 55호

『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8월 22일

인천광역시의회 의장

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」 [별표 2]에 따라 유지관리비 산출 시 오수 배출 사업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배출량(건축물 연면적 기준)에 근거하여 유입 승인 오염부하량이 산정됨에 따라, 실제 오수 배출량이 소량인 경우 부담금 부과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오·폐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변경하고
- 나.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의 해당연월의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2개월 후 확정 고시되므로 부과 시점과 상이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산출기준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의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산출 공식 중 유입승인 부하량과 실제 배출부하량의 비율을 조정함 (별표 2 제1호)
- 나. 시설재투자적립금 중 물가 상승률 산출방법을 변경하고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산정 시 오수 배출사업자의 오수 승인유량 조건을 명시함(별표 2 제1호)
- 다. 월평균 기준 오수·폐수 배출량이 2,000m³/일을 초과(2015년 4월) 함에 따라 초기 유지관리비 산출을 삭제함(별표 2 제3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. 8. 30.(화)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-6235, 팩스 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·반여부와 그 사유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붙임자료

가. 조례안 1부

나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
**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
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진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3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19.

발의자 : 김진규·정창일·
김종인·임정빈 의원

(찬성자 5명)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」[별표 2]에 따라 유지관리비 산출 시 오수 배출 사업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배출량(건축물 연면적 기준)에 근거하여 유입 승인 오염부하량이 산정됨에 따라, 실제 오수 배출량이 소량인 경우 부담금 부과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오·폐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변경하고
- 나.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의 해당연월의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2개월 후 확정 고시되므로 부과 시점과 상이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산출기준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의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산출 공식 중 유입승인 부하량과 실제 배출부하량의 비율을 조정함 (별표 2 제1호)
- 나. 시설재투자적립금 중 물가 상승률 산출방법을 변경하고 유입승인

오염부하량 산정 시 오수 배출사업자의 오수 승인유량 조건을
명시함(별표 2 제1호)

다. 월평균 기준 오수·폐수 배출량이 2,000m³/일을 초과(2015년 4월)
함에 따라 초기 유지관리비 산출을 삭제함(별표 2 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산출공식

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(BS)

가. BS :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, COD, SS, T-N, T-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

$$BS = M \times \left\{ 0.3 \frac{\sum_{i=1}^n BLi}{\sum_{i=1}^n F(Li)} + 0.7 \frac{F(Li)}{\sum_{i=1}^n F(Li)} \right\}$$

(1) M : 월간 유지관리비 = 운영관리비 + 시설재투자적립금

(가) 운영관리비 :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.

(나) 시설재투자적립금 :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·보완,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.

- 시설재투자적립금 (E) = $Ei \times Fi \times R$

1) Ei :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

-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되는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

2) Fi :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= 2/1,000

3) R : 물가상승률(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÷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)

(2) BLi :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. 다만,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.

- 유입승인 오염부하량(kg)

$$= \{ \text{유량} \times (\text{BOD} + \text{COD} + \text{SS} + \text{T-N} + \text{T-P}) \} \times 1/1000$$

※ 오수 배출사업자의 경우 유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한다.

(3) F(Li) :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 · 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.

$$a \cdot Q_i \times \left(\frac{b \cdot \text{BOD}_i + c \cdot \text{COD}_i}{2} + d \cdot \text{SS}_i + e \cdot \text{T-N}_i + f \cdot \text{T-P}_i \right)$$

(가) Qi :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 · 폐수 등의 배출량

(나) a, b, c, d, e, f :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.

1) 종별 계수

구 분	a	비 고
폐 수	1.5	
오 수	1.0	

2) BOD 계수

BOD 값 (mg/l)	b	비 고
BOD ≤ 200	1.0	
200 < BOD ≤ 300	1.1	
300 < BOD ≤ 400	1.2	
400 < BOD ≤ 500	1.4	
500 < BOD ≤ 600	1.6	
600 < BOD	2.0	

3) COD 계수

COD 값 (mg/l)	c	비 고
COD ≤ 200	1.0	
200 < COD ≤ 300	1.1	
300 < COD ≤ 400	1.3	
400 < COD ≤ 500	1.6	
500 < COD ≤ 600	2.0	
600 < COD ≤ 700	2.5	
700 < COD	3.0	

4) SS 계수

SS 값 (mg/l)	d	비 고
SS ≤ 200	1.0	
200 < SS ≤ 300	1.1	
300 < SS ≤ 400	1.2	
400 < SS ≤ 500	1.4	
500 < SS ≤ 600	1.6	
600 < SS	2.0	

5) T-N, T-P 계수

T-N 값 (mg/l)	T-P 값 (mg/l)	e, f	비 고
T-N ≤ 40	T-P ≤ 4	1.0	
40 < T-N ≤ 100	4 < T-P ≤ 8	1.1	
100 < T-N ≤ 200	8 < T-P ≤ 16	1.2	
200 < T-N ≤ 300	16 < T-P ≤ 32	1.4	
300 < T-N	32 < T-P	1.6	

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별표 2 유지관리비산출기준 1.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(BS) 가. BS :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, COD, SS, T-N, T-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$BS = M \times \left\{ 0.5 \frac{\sum_{i=1}^n BLi}{n} + 0.5 \frac{\sum_{i=1}^n F(Li)}{n} \right\}$	별표 2 유지관리비산출기준 1.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(BS) 가. ----- ----- ----- $BS = M \times \left\{ 0.3 \frac{\sum_{i=1}^n BLi}{n} + 0.7 \frac{\sum_{i=1}^n F(Li)}{n} \right\}$
(1) M : 월간 유지관리비 = 운영관리비 + 시설채투자적립금 (가) 운영관리비 :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. (나) 시설채투자적립금 :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·보완,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. - 시설채투자적립금 (E) = Ei × Fi × R 1) Ei :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-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되는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2) Fi :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= 2/1,000 3) R : <u>물가상승률(해당연월의 물가지수 ÷ 준공연월의 물가지수)</u>	(1)----- ----- (가) ----- ----- ----- ----- (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)----- ----- ----- 2)----- ----- 3) -----(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 ÷ 준공년도 생산자 물가지수)

(2) BLi :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. 다만,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. - 유입승인 오염부하량(kg) $= \{ \text{유량} \times (\text{BOD} + \text{COD} + \text{SS} + \text{T-N} + \text{T-P}) \} \times 1/1000$ <신 설>	(2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※오수 배출사업자의 경우 유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한다.
3. 초기 유지관리비 산출 가. 초기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하여 초기 일정량 오수·폐수 유입 시기까지 유지관리비 지원 ①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월평균 기준 오수·폐수 배출량이 최초로 2,000m³/일을 초과하는 시기의 해당 연도까지는 원인자(사업자)에게 664원/m³ 징수하고, 부족한 유지관리비는 인천광역시가 지원한다. ② 산출공식 - 업체별 월간 유지관리비 = 오수·폐수 총 배출량(톤/월) × 664원/톤 나. 월평균 기준 오수·폐수 배출량이 2,000m³/일을 최초 초과하는 시기의 다음 연도부터는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비(시설재투자적립금 포함)를 징수한다.	<삭 제>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○ 제48조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) ○ 제48조의2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련 법령 발췌 사항

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
- 제48조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(이하 "원인자"라 한다)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1. 한국환경공단
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(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
3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48조의2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"시행자"라 한다)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부담금(이하 "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"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·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, 부과·징수의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·관리 부담금은 100% 원인자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

환경녹지국 수질환경과장 이 의 연